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8-276
----------	-------

제출년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19.8.6.) 시행으로,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지정 (안 제3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안 제5조)

□ 제정조례안 : 붙임1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2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3

□ 사전예고(결과) : 붙임4(의견 1건, 미반영)

- 입법예고 : 2019. 9. 26. ~ 2019. 10. 16.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방침 결재문 : 붙임5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 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 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그 부서의 과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이하 “적극행정 면책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안산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적극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예산법무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담당·팀장 직위·성명	법무규제개혁팀장 김정삼
	담당자 성명·전화	정우 (행정 2059)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8-276호
----------	---------

제안년월일 : 2019. 12. 5.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불필요 약칭 및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입법의 간결성을 유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불필요 약칭 정비(안 제2조)
- 상위법과 중복에 따른 조항 정비 (안 제3조 ~ 제4조)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을 “안산시 공무원”으로 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3조(종전의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원 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적극행정” 이란 <u>안산시</u>(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p> <p>1. ----- <u>안산시</u> <u>공무원</u> -----.</p> <p>-----.</p>
<p>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u>안산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그 부서의 과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p>	<p>2. (원안과 같음)</p> <p>〈<u>삭</u> <u>제</u>〉</p>
<p>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u>시장</u>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p>	<p>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u>안산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p>

원 안	수정안
<p><u>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u></p> <p><u>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이하 “적극행정 면책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u></p> <p><u>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u></p> <p><u>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 ~ ③ (생략)</p>	
<u>제5조 ~ 제11조 (생략)</u>	<u>제4조 ~ 제10조 (원안 제5조부터 제11조 까지와 같음)</u>